

교수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제정 : 2009. 02. 13.
 개정 : 2016. 08. 05.
 개정 : 2018. 08. 07.
 개정 : 2019. 05. 03.
 개정 : 2020. 06. 05.
 개정 : 2021. 08. 06.
 개정 : 2021. 11. 05.
 개정 : 2022. 08. 05.
 개정 : 2023. 08. 04.

담당 : 교학팀(02-950-5406)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신앙영역의 배점 및 요소)	제3조(신앙교육참여도)	제4조(예배참석)
제5조(교육영역의 배점 및 요소)	제6조(수업계획)	제7조(수업진행)	제8조(수업혁신 노력)
제9조(수업성과)	제10조(수업부담)	제11조(학생지도)	제12조(교육행정수행)
제13조(연구영역의 배점 및 요소)	제14조(저서)	제15조(논문)	제16조(학술회의 발표논문)
제17조(수상)	제18조(특허)	제19조(연구보고서)	제20조(외부연구과제 수탁)
제21조(기타 연구업적)	제22조(봉사영역의 배점 및 요소)	제23조(교내 봉사)	제24조(대학발전 기여)
제25조(산학교류)	제26조(학술단체활동)	제27조(사회봉사)	제28조(수상)
제29조(교회봉사)	제30조(기타업적)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8조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지 각 평가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배점기준의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앙영역

제2조(신앙영역의 배점 및 요소) 신앙영역의 업적은 총 배점이 250점이며, 신앙훈련참여도, 예배참여 실적 등의 요소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세부기준 및 배점은 <별표1>과 같다. 단, 교목실장은 당해 최고점수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

제3조(신앙교육참여도) 신앙교육참여도의 총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 ① 신앙교육참여도는 FT, 밀알훈련, 전도훈련, BRC운영(성경읽기), 기타 일립교육과정 등의 지표로 평가한다.(개정18.08.07.)
- ② FT와 밀알훈련은 전 행사를 참여했을 때만 인정하고, 성경읽기는 사전에 일립교육과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22.08.05.)
- ③ 일립교육과정은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과 행사 등 일립교육과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개정 2022.08.05.)
- ④ 수업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것과 행사참여 혹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제4조(예배참석) 예배참석의 총 배점은 150점으로 한다.

- ① 예배참석은 교직원 아침경건회, 학부 채플 및 대학원채플 참여 등의 지표로 평가한다.(개정18.08.07.)
- ② 예배참석은 1개월 단위로 보고하는데 매달 익월 10일까지 학사인트라넷을 통해 입력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참여 실적 미제출시 불참으로 평가한다.(개정18.08.07.)

제3장 교육영역

제5조(교육영역의 배점 및 요소) 교육영역의 업적은 총 배점이 350점이며, 평가는 수업계획 및 수업진행, 수업혁신을 위한 노력, 수업성과, 수업부담, 학생지도, 교육행정 이행여부 등의 요소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세부기준 및 배점은 <별표2>과 같다.

제6조(수업계획) 수업계획의 총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 ① 수업계획은 수업계획서의 충실도를 평가한다.
- ② 수업계획서 충실도는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수업내용 제시, 수업방법과 과제운영, 수업방법과 핵심역량의 관계성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다.(개정19.05.03.)

제7조(수업진행) 수업진행의 총 배점은 80점으로 한다.

- ① 수업진행은 출결관리, 휴강과 보강, 평가(시험) 운영, 피드백, 성적분포 등의 지표로 평가한다.
- ② 출결관리는 출결기록의 엄정성과 결석자에 대한 출석인도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 ③ 휴강과 보강은 가점평가가 아닌 감점평가를 한다. 단, 학교 공무로 인한 휴강, 직계가족 상, 본인 입원 등은 감점하지 않는다.(개정16.08.05.)
- ④ 평가(시험) 운영은 얼마나 다양하게 수행했는가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 ⑤ 피드백은 이행 보고와 수강생의 체감도 평가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⑥ 성적분포는 학점비율의 상대적 적용 수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수업혁신 노력) 수업혁신을 위한 노력의 총 배점은 90점으로 한다.(개정19.05.03.)(개정20.06.05.)

- ① 수업혁신을 위한 노력은 CQI보고서 충실도, 학습자 중심(L.C.) 교수방법 적용, 교내외 연수 참여, 교수클리닉 참여 등의 지표로 평가한다.(개정18.08.07.)(개정21.08.06.)
- ② 삭제(개정18.08.07.)
- ③ 삭제(개정18.08.07.)
- ④ 학습자 중심 교수방법(L.C.) 적용은 평가위원회 평가를 기반으로 평가한다.(개정21.08.06.)
- ⑤ 교내외 연수 참여와 교수클리닉 참여는 수업혁신을 위한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 ⑥ CQI보고서 충실도는 학습성과 측정, 수업평가를 반영한 개선사항, 교수방법, 평가방법, 학습성과 개선방향울 기반으로 평가한다.(개정18.08.07.)

제9조(수업성과) 수업성과의 총 배점은 50점으로 한다.(개정20.06.05.)

- ① 수업성과는 수업평가, 중도탈락률, 취업률 및 취업을 위한 노력 등의 지표를 평가한다.(개정18.08.07.)
- ② 수업평가의 대상은 교원(강의교수를 포함한다)이 담당하 학부과정의 전 강좌로 한다. 다만, 보직에 의하여 대학원 강의만 있는 경우에는 학부와 대학원 수업평가 전체 평균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개정18.08.07.)
- ③ 삭제(개정18.08.07.)
- ④ 강좌별 수업평가의 유효인원 7명이상으로 한다.(개정18.08.07.)
- ⑤ 삭제(개정18.08.07.)
- ⑥ 중도탈락률과 취업률은 절대값과 3년간 평균값에서의 개선정도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 ⑦ 중도탈락률과 취업률과 관련하여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교수의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수업부담) 수업부담의 총 배점은 50점으로 한다.

- ① 수업부담은 시수, 과목수, 수강학생수를 고려한 것과 야간·원어·계절·0교시 강의 등의 지표로 평가한다.
- ② 시수는 전후 학기를 평균한 책임시수를 기준으로 한다. 즉, 책임시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수를 0으로 처리하고 책임시수를 1로 하고 이후 추가로 가산해 간다.

제11조(학생지도) 학생지도의 총 배점은 50점으로 한다.

- ① 학생지도는 실습지 방문, 대학원 학위논문지도, MT등 학과단위 참석, 학교 및 총학생회 행사 참석, 학과의 신입생예비대학참석률, 학생상담 등의 지표로 평가한다.
- ② 실습지 방문은 보고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 ③ 학과의 신입생예비대학 참석률과 관련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교수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행정수행) 교육행정수행에 관련 사항은 성적이의신청 반영, 학사일정 기일준수, 미신고 타 대학 출강에 따라 감점한다.(개정18.08.07.)

제4장 연구영역

제13조 (연구영역의 배점 및 요소) 연구영역의 업적 총 배점은 200점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전공분야와 관련 된 것이어야 하고, 그 평가는 저서, 논문, 논문발표, 특허, 연구보고서, 외부연구과제수탁의 요소로 평가하되 세부기준 및 배점은 <별표3>과 같다.(개정18.08.07.)

제14조(저서) 저서는 국제수준의 학술서 및 저서, 국내 전문학술서, 전문학술번역서, 편저서, 기타저서, 저서개정판 등의 지표로 평가한다.(개정19.05.03.)

- ① 저서는 국내·외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를 말한다. 저서 개정판은 기 출판된 저서의 내용을 개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전문학술번역서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전공분야의 번역서를 말한다.
- ③ 편저는 여러 사람의 논문을 묶어 편저자나 공동저작자로 출판한 서적을 말하며, 대학 교양교재를 포함한다.

제15조(논문) 논문은 국제논문과 국내논문으로 구분하며, 국제논문은 국제전문학술지, 국제일반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을 지표로 하고, 국내논문은 국내전문학술지, 국내일반학술지, 일립논총, 기타논문집을 지표로 하여 평가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18.08.07.)

- ① 국제전문학술지는 SCI급 / SCOPUS 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등)에 게재된 논문을 말한다.(개정18.08.07.)
- ② 국제일반학술지는 위의 1항을 제외한 기타 국제발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말한다.(개정18.08.07.)
- ③ (삭제18.08.07.)
- ④ 국내전문학술지는 KCI급(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말한다.(개정18.08.07.)
- ⑤ 국내일반학술지는 위의 4항을 제외한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기타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말한다.(개정18.08.07.)
- ⑥ 기타논문집은 기념논문집 또는 연구소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을 말한다.(개정18.08.07.)
- ⑦ 일립논총은 본교에서 발간하는 『일립논총』에 게재된 논문을 말한다.(개정18.08.07.)

제16조(학술대회 발표논문) 논문발표는 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지표로 하여 평가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18.08.07.)(개정19.05.03.)(개정23.08.04.)

- ① 국제학술대회 발표는 학술지 발간기관의 정기개최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18.08.07.)(개정23.08.04.)
- ② (삭제23.08.04.)
- ③ (삭제18.08.07.)
- ④ 국내학술대회 발표는 학술지 발간기관의 정기개최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18.08.07.)(개정23.08.04.)
- ⑤ (삭제23.08.04.)

⑥ (삭제23.08.04.)

제17조(수상) (삭제18.08.07.)

제18조(특허) 특허는 국제발명특허·기술이전·소프트웨어저작권과 국내발명특허·기술이전·소프트웨어저작권 그리고 실용신안특허 등의 지표로 평가한다. 단, 특허와 실용신안특허는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그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 특허의 특허권자나 발명자 또는 고안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한다.(개정18.08.07.)(개정19.05.03.)

제19조(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국가기관연구보고서, 정부투자기관연구보고서·지방자치단체연구보고서 그리고 기타 연구보고서, 주요 정책 과제 참여 등의 지표로 평가한다.(개정18.08.07.)

제20조(외부연구과제 수탁) 외부연구과제수탁은 연구비 수탁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21조(기타 연구업적) ①예능계연구업적은 공인전문단체(국립, 시립단체, 기타전문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독창회, 반주, 협연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제5장 봉사영역

제22조(봉사영역의 배점 및 요소) 봉사영역의 업적 총 배점은 200점으로 하며, 교내봉사, 대학발전 기여, 산학교류, 학술단체활동, 사회봉사, 수상, 교회봉사 등의 요소로 평가하되 세부기준과 배점은 <별표 4>와 같다.(개정19.05.03.)

제23조(교내봉사) 교내봉사의 총 배점은 60점으로 한다.(개정16.08.05.)(개정19.05.03.)

① 교내봉사는 보직수행과 위원회활동 및 각종 교내활동 등의 지표로 평가한다.

단, 보직에 있어서 상·하위 보직을 겸할 경우에는 상위 보직 점수만을 부여한다.

② (삭제19.05.03.)

③ (삭제19.05.03.)

④ 위원회의 경우 회의 외에 논문심사나 평가 등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개정16.08.05.)(개정18.08.07.)(개정19.05.03.)

⑤ 각종 교내활동 등은 무보수 특강이나 강연, 심사, 입시홍보, 입시면접 등을 말한다.(개정16.08.05.)(개정18.08.07.)(개정19.05.03.)

제24조(대학발전 기여) 대학발전 기여의 총 배점은 60점으로 한다.(개정16.08.05.)(개정20.06.05.)

① 대학발전 기여는 발전기금 지표로 평가한다.(개정18.08.07.)

② (삭제18.08.07.)

③ 발전기금유치활동은 본인의 기여와 외부유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25조(산학교류) 산학교류의 총 배점은 30점으로 한다.(개정18.08.07.)

① 산업자문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자문한 것을 말한다.(개정16.08.05.)(개정18.08.07.)(개정19.05.03.)

② 산학협력 체결 기여는 공식적 산학협력을 체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말한다.(개정 18.08.07.)(개정19.05.03.)

제26조(학술단체활동) 학술단체활동의 총 배점은 10점으로 하며, 국내외의 학회활동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단체에서의 활동을 말한다.(개정19.05.03.)

① (삭제19.05.03.)

② (삭제19.05.03.)

③ (삭제19.05.03.)

④ “학술단체의 회장단”은 학술단체에서 회장단으로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신설19.05.03.)

⑤ “학술단체의 이사·편집위원(장)·분과위원장(Chair)”은 학술단체에서 이사 또는 편집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Chair)으로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신설19.05.03.)

⑥ “학술대회 등 임시활동”은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서의 임시적 활동(사회, 토론, 좌장, 조직위원 등)을 말한다.(신설19.05.03.)

제27조(사회봉사) 사회봉사의 총 배점은 20점으로 하며,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개정19.05.03.)

①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임원 및 위원(개정16.08.05.)(개정19.05.03.)

② 사회봉사단체 임원 및 위원(개정16.08.05.)(개정19.05.03.)

③ 언론 매체는 일간지, 권위 있는 잡지에 한하며 공중파 매체의 출연은 사회자, 토론자, 역할이 부여된 출연자에 한한다.(개정16.08.05.)(개정19.05.03.)

④ 기타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 등록된 봉사와 공문으로 봉사를 인정한 것에 한한다. (개정 16.08.05.)(개정18.08.07.)(개정19.05.03.)

⑤ KOCW(Korea Open CourseWare)강의공개는 PPT와 동영상으로 구분한다.(개정16.08.05.)(개정 19.05.03.)

제28조(수상) 수상의 총 배점은 10점으로 하며,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개정19.05.03.)

① 국가기관에서 수여하는 수상(개정19.05.03.)

②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체단체에서 수여하는 수상(개정19.05.03.)

③ 기타 수상(개정19.05.03.)

제29조(교회봉사) 교회봉사의 총 배점은 10점으로 한다.

① 교회봉사란 협동목사, 교사, 성가대 등의 지속적인 봉사를 말한다. 단 장로, 집사, 권사직분은 제외한다.(개정16.08.05.)

제30조(기타업적) 교육, 연구, 봉사업적에 속하지는 않으나 특히 교위를 선양하는 등과 같이 따로 그 업적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및 배점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세칙은 2017년 업적평가(2016년 2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에 대한 업적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세칙은 2019년 업적평가(2018학년도 2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에 대한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② 단, 시행세칙 제19조(연구보고서)의 주요 정책 과제 참여 지표는 2018년 업적평가(2017학년도 2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에 대한 업적평가)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세칙은 2019년 업적평가(2018학년도 2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에 대한 업적평가)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세칙은 2021년 업적평가(2020학년도 2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에 대한 업적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세칙은 2021년 업적평가(2021학년도 2학기부터 2022학년도 1학기까지에 대한 업적평가)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18.08.07.)(개정 2022.08.05.)

신앙영역 점수배점 및 평가기준 (250점)

평가요소	지표	배점			평가기준 및 비고
		기본	가점	한도	
신앙 교육 참여도 [100점]	F.T	10			
	밀알훈련	30(1회)	2회부터 20×참여횟수		○ 담당보직자는 가점 제외
	전도훈련	20(-4)			○ 기본에서 휴강시 -4점 감점
	BRC운영 (성경읽기)	학기당 10			○ 수업외의 성경읽기모임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립교육과의 사전승인 을 받음, 배점은 일립교육과가 제안 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수업외 BRC운영 배점 - 교수 1명이 학생 7명 이상 주5일-10점, 주3일-7점, 주1일-3점
	일립교육과정 (교과/비교과)				○ 일립교육과가 항목과 배점을 제 안, 평가위원회 결정 ○ 일립교육과의 신앙교육 주제 년차 교육, 밀알훈련 자원봉사자 교육 참여시 1회당 1점
예배 참석 [150]	아침 경건화· 학부 채플· 대학원 채플	1회당 1			○ 연간 96회에 미달한 경우 (미달 횟수*4)점을 감점 ○ 96점과 150점 사이로 표준화 적 용(2표준 편차내 점수 활용)

▶ 확인은 일립교육과에서 수행

<별표2>(개정18.08.07.)(개정19.05.03.)(개정21.08.06.)

교육영역 점수배점 및 평가기준 (350점)

평가요소	지표	배점			평가기준 및 비고
		기본	가점	한도	
1. 수업계획 [30]	수업계획서 충실도	30			○모니터링 결과 1차 완료 30점, 2차 완료 20점, 3차 완료 10점, 4차 이후 완료 0점
2. 수업진행 [80]	출결관리	20			○3회 연속 결석자 상담결과(사유-출결 관련) 학사인트라넷 상담이력 활용 ○3회 연속 결석자가 없을 경우 20점 만점 부여
	휴강과 보강	20	-3+(-5)		○기본 점수 부여하고 감점하는 방식 ○휴강3점 감점, 보강없는 경우 추가 5점 감점
	평가(시험) 운영	10			○성적평가요소(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과제물) 1개당 2.5점 2개학기 평균
	피드백	20			○수업평가 상호작용 문항 활용, 과목 평균 5.0점-20점, 4.5점 이상-16점, 4.0점 이상-12점, 3.5점 이상-8점
	성적분포, 학사관리	10			○상대평가 적용 학기당 5점
3. 수업혁신 노력 [90]	CQI보고서 충실도	30			○평가팀 평가 A-30점, B-20점, C-10점 (평가팀은 외부전문가, 교수학습센터장 등으로 구성함)
	학습자 중심(L.C.) 교수방법 적용	0~20			○ 평가팀 평가 학기당 A-10점, B-8점, C-6점
	교내의 연수 참여	회당 4		25	
	교수클리닉 참여	회당 3~7		25	○교내 교수클리닉 3, 교외 교수클리닉 5, 교외 마이크로티칭 7
4. 수업성과 [50]	수업평가	30			○3점대 0점, 5점 만점 30점에서 0.1점 감소에 따라 2점씩 감점하며 소수 둘째자리 절사 적용(4.9점대-28점, 4.8점대-26점 4.7점대-24점...3점대-0점)
	중도탈락률(학과공동)	10			○절대기준(순서) 5-4-3-2-1, 향상기준(순서) 5-4-3-2-1 ○기초교육원 소속 교수 : 핵심역량 향상 과목개발 적용시 5점 한도내 부여 / 1학년 중도탈락율 5점 한도내 부여 - 전년도기준 0.5점 감소시마다 1점씩 가점
	취업률(학과공동) 취업을 위한 노력	10			○절대기준(순서) 5-4-3-2-1, 향상기준(순서) 5-4-3-2-1 ○기초교육원 소속 교수 : 프리덤학기 만족도 100-5, 99~98-4, 97~96-3, 95~94-2, 93~-1 / 프리덤학기 이수율(강의자만 적용) 100-5, 99~98-4, 97~96-3, 95~94-2, 93~-1

평가요소	지표	배점			평가기준 및 비고
		기본	가점	한도	
5. 수업부담 [50]	시수, 과목수, 수강학생수	25			○시수는 18학점이 상한(추가시수 인정과 맞춤) ○{학생수+(학생수×시수×과목수)}/10 → 표준화 적용 (대학원인 경우 학생수에 1.5를 곱하고, 시수는 책임시수를 달성하지 못하면 0을 부여하고 책임시수를 1로 산정하며 이후 시수를 더해감)
	야간 강의	주 일수×1		10	○대학원 강좌인 목회실습, 논문지도, 논문세미나는 제외
	원어 강의	학점당 2		20	
	계절 강의	학점당 2		20	○프리딤학기 제외
	0교시 강의	학점당 2		20	○바이블리딩 제외
6. 학생지도 [50]	실습지 방문	회당 2		20	
	논문지도	1명당 5		20	○인원수는 졸업생(수료제외) 기준
	MT등 학과단위 모임 참석	회당 1		10	○기초교육원 소속 교수 참석시 점수 부여
	학교행사, 총학생회 행사 참석	회당 3 (-5)		15	○가점 - 졸업예정자 총장초정간담회, 신편입생 예비대학, 신입생학부모초청간담회, 학위수여식, 체육대회 ○감점 - 교원연수
	신입생예비대학 학생 참석률	5		5	○95%~ 5점, 90-94 4점, 85~89 3점, 80-84 2점, ~79 1점 ○기초교육원 소속 교수 참석률 제고 노력 참여시 점수 부여
학생상담	1인당 1		30	○학사인트라넷 상담이력 활용	
7. 교육행정 수행	성적이의신청 반영	건당 (-5)			○교원의 성적처리 문제로 인해 성적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건당 감점
	학사행정기일준수(성적, 수업계획서)	건당 (-5)			○기일 내 미제출시 건당 감점
	미신고 타 대학 출강	(-(출강횟수×8))			○미신고 타 대학 출강횟수에 8을 곱한 점수를 감점

▶ 확인은 교학처(교학팀, 교수학습센터)에서 수행

<별표 3>(개정18.08.07.)(개정19.05.03.)(개정21.08.06.)(개정21.11.05.)(개정23.08.04.)

연구영역 점수배점 및 평가기준 (200점)

평가요소	지표		배점			
			기본	한도	평가기준 및 비고	
1. 저서	가. 국제 수준의 학술서 및 저서		200	200쪽 기준	○180쪽 이상 80% 인정 ○200쪽 이상 100% 인정	
	나. 국내 전문학술서		100			
	다. 전문학술번역서		80			
	라. 편저서, 기타저서		30~80	○편저서 30 기타저서 80 개정서 50한도 내에서 평가 인정 (학술심의위원회에서 판단) ○개정서 : 저서배점×개정율÷저자수		
	마. 저서 개정판		~50			
2. 논문 (KRI 기준에 따름)	가. 국제 논문	국제전문학술지	250	300	○발표로 지난 업적평가 점수를 이미 받은 경우, 산정된 점수에서 기획특 점수를 제외한 점수로 인정	
		국제일반학술지	200			
	나. 국내 논문	국내전문학술지	120			
		국내일반학술지	100			
		일립논총	80			
		기타논문집(기념논문집, 연구소논문집)	30			100
3. 학술대회 발표논문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50	100	○KRI-학술활동에서 원문파일을 업로드한 경우만 인정 ○포스터 발표는 기본배점의 50%로 인정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		30			
4. 특허	가. 국제발명특허·기술이전·소프트웨어저작권		120	220		
	나. 국내 발명특허·기술이전·소프트웨어저작권		100			
	다. 실용신안		50			
5. 연구보고서	가. 국가기관 연구보고서		100	100	200	○ 교내 주요 정책과제 별 점수 - 정부차원 30점, 학교차원 15점, 학과차원 5점
	나. 정부 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보고서		50			
	다. 기타 연구보고서(정부기관 연구 계획서)		30			
	라. 교내 주요 정책연구 과제보고서		~30			
6. 외부연구 과제수탁			1000만원까지 1백만원*10 + 1000만원초과부터 1백만원*3			

- 주) 1. 연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KRI(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점수는 KRI에서 산정한 점수를 적용(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한다.
2. 외부연구과제수탁에 있어 교내에서 대응연구비로 지출되어 연구비가 수탁된 경우는 수탁금액의 50%인정한다.
3. 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활동실태조사 논문실적 기준」에 따른다.
4. 전공과의 연계성이 불일치되는 논문의 경우 학과위원회를 거쳐 전공연계성 유무를 판단하고, 전공연계성이 불인정되는 경우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학술발표 논문집에 논문 전문 또는 초록이 게재된 경우만 인정하며, 국제학술대회는 발표자 분포가 3개국 이상이어야 한다.
6. 저서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출판물로 시중에 정식 유통되어 국내·외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도서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대학교재는 1학기 이상 강의교재로 사용한 경우 인정한다.
- ▶ 확인은 교학처(교학팀)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

<별표4>(개정18.08.07.)(개정19.05.03.)(개정 2022.08.05.)

봉사영역 점수배점 및 평가기준 (200점)

평가요소	지표		배점			평가기준 및 비고
			기본	가점	한도	
1. 교내봉사 [60점]	가. 부총장, 부장, 대학원장, 처·실장		30			○점직시 상위점수로 반영
	나. 학과장, 도서관장, 일립생활관장		20			
	다. 대학원주임교수, 센터장, 일립교육과장		15			
	라. 교무위원회		1.5×참여회수			
	마. 일반위원회		1×참여회수	2		○논문심사, 평가 등 구체적 과업이 있는 경우 2점 가점
	바. 특강, 심사 등 교내 활동		1건당 3			○대학자체감사, 교수 활동 지원(학기당 3점) 등
	사. 입시면접		1건당 3~10			○학부 1건당 10점, 대학원 1건당 3점
아. 입시홍보		1건당 5		15	○학부, 대학원	
2. 대학발전 기여[60]	발전기금유치		15만원당 1		60	○연 기부금 유치기준(본인포함)
3. 산학교류 [30점]	가. 산업자문 (산업체 자문 및 교육)		1회당 5		30	○산학협력단을 통한 산업자문
	나. 산학협력 체결 기여		기관당 3			
4. 학술단체 활동 [10점]	가. 학술단체의 회장단		5			○학술단체는 최대 2개만 인정 ○1개의 학술단체에서는 한 가지만 인정
	나. 학술단체의 이사, 편집위원(장), 분과위원장(Chair)		4			
	다. 학술대회 등 입시활동		3			
5. 사회봉사 [20점]	가.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임원 및 위원	기관당 2	6	○구립·시립인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나. 사회봉사단체		임원 및 위원	기관당 1	4	
	다. TV/라디오방송출연 (단순인터뷰 제외)			회당 2	10	
	라. 신문, 잡지의 칼럼, 논설, 시론, 대담 (독자투고 의견제외)			회당 2	10	
	마. 기타 자원봉사			시간당 1	20	○기타 자원봉사 - VMS 또는 1365 등록, 공문 제출
	바. KOCW 강의공개		PPT	과목당 5	10	○1차시 15장 기준 12차시 이상 강의자료 업로드
동영상			과목당 10	20	○1학점당 150분 이상 강의자료 업로드	
6. 수 상 [10]	가. 국가기관에서 수여하는 수상		1회당 5			
	나.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여하는 수상		1회당 3			
	다. 기타수상		1회당 1		3	○교내수상 제외
7. 교회봉사 [10점]	협동목사, 교사, 성가대 등		10			

- ▶ 확인은 교학처(교학팀)와 대외협력팀에서 수행.
- ▶ 4~7번은 각 영역별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됨.